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

2018. 3. 8.

**관계부처 합동**

# 순 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	1
II. '17년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 .....	2
III. 최근 문제화된 아동학대 사건의 시사점 ...	4
IV. 보완대책 .....	6
V. 향후 추진계획 .....	13
붙임 1.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제 .....	15
붙임 2.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	16
붙임 3.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인식 조사결과 ...	18

## □ 추진배경

- 최근 미취학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재점검 및 보완 필요성 제기
  - \* 고준희(5세, 여) 학대치사 및 은폐사건, 방임·화재로 사망한 광주 삼남매사건 등
- 대통령, ‘아동학대 대책 점검 및 실효성 제고’ 지시(1.8, 수보회의) 및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 발표(1.10, 신년사)
- 국무총리, ‘영유아 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정비, 기존 대책 점검 및 보완,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지시(1.9, 국무회의)
-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위기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실행계획 마련 필요

## □ 추진경과

- ‘14.2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13.10)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최초로 마련
  - \* △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 △ 신고체계 112로 통합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지침 시행 △ 신고의무자 신고활성화 방안 마련 등
- ‘15년,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련예산을 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으로 편성
- ‘15년말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16.3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및 건강검진 등 미 실시 영유아 일제 점검 △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등 인프라 확충 등 34개 과제
- 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및 아동복지시설 내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2차에 걸쳐 보완대책 추가 마련(‘16.9, ‘17.2)

## Ⅱ '17년 아동학대 현황 및 특징

◆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및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는 범죄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가정 내 학대 미발견 등 사각지대 존재

### □ 매년 완만하게 상승 중인 아동학대 발견율

- 국민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실정
  - (신고·판단건수) '17년 신고건수는 34,221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 판단건수는 21,524건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
  - (아동학대 발견율\*) '17년 2.51‰로 전년대비 0.36‰p 상승하였으나, OECD 주요국 발견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

\*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



### □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

-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이며, 특히 재학대 사례의 경우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

\* 가해자 유형 : 부모(77.2%), 대리양육자(14.2%), 친인척(4.8%), 기타(3.8%)

- 아동학대의 가장 큰 동기\*는 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 양육방법 이해부족(36.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18.8%), 부부갈등(9.7%) 등

□ 미취학 아동은 중대학대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

- '17년 학대 피해아동 중 만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19.9%(4,282건)이나, 학대 사망아동 중에서는 전체의 80.6%(25명)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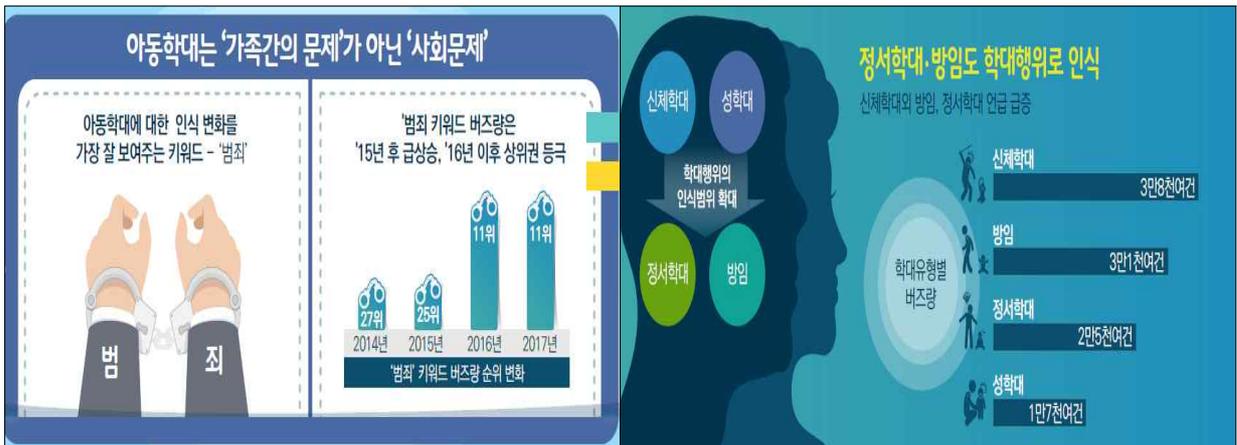
< '17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현황 >

연령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2세
사망자 수	31	12	2	3	3	2	3	1	2	1	1	1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17.11월, 소셜 빅데이터 분석)

-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신체학대 외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대
- 기존에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않던 정서학대·방임 및 아동훈육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문제의식 지속 강화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조사 >



□ 적정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17.9월, 국민인식 조사)

- 응답자 대다수(85.2%)가 '훈육과정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
- 아동학대 의심에도 불구하고 '남의 가정문제(42.5%)', '학대행위자에 의한 보복 우려(35%)', '신고방법 부지(32.5%)' 등으로 신고 기피

## &lt; 사전예방 &gt;

- 시흥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 : 친부와 친모(미성년 출산자)가 평소 생활고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녀(총 3명)를 구타, 의료·양육방임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친부가 폭행해 사망
-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 친부는 PC방에, 친모는 음주를 위해 3남매를 장시간 방임 후 친모가 만취상태에서 화재를 일으켜 3남매 모두 사망

- (문제점) 양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면서 정작 교육이 절실한 취약·위기가정 부모, 아동 등은 소외
- (보완방향)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의 제도화를 통한 사전예방체계 강화

## &lt; 조기발견 &gt;

- 전주 5세 여아 실종·사망 사건 : 어린이집에서 퇴소한 5세 미취학 아동이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사망하였으나, 약 8개월간 관련 사실 발견 실패
- 대구 3세 남아 사망 사건 : 친부가 애견용 목줄로 만 3세 미취학 아동을 침대에 묶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였으나 관련 사실 발견 실패

- (문제점) 국가·지자체·신고의무자 등 1차 발견체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 기회가 거의 없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가정 내 학대는 감시 사각지대도 존재
- (보완방향) 신고 없이도 위기가정을 사전에 예측해 적극적인 가정 방문·안전확인 추진,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감시체계 강화

## < 신속대응·보호 >

- 목포 5세 남아 실명 사건 : 학대의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친모 교제남의 진술에만 의존해 별도 조치 없이 일반사례로 판정하였으나, 2달 뒤 지속적인 학대 후유증으로 아동의 안구적출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폭행 사건 : 상담원이 피해아동을 분리조치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자인 친부가 담뱃불로 위협해 상담원 화상 진단

- (문제점) 주요 선진국\*과 달리 민간위탁\*\* 중심의 아동보호체제로 공공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미·영·일, 신고접수·현장조사·보호조치는 지방(주)정부에서 직접 수행

\*\* 현재 6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58개가 민간위탁 운영(서울2, 부산1 직영) 중, 사건조사 시 민간인 신분 상의 한계로 학대행위자의 협조 거부 빈번

- (보완방향)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적정 인프라 확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신분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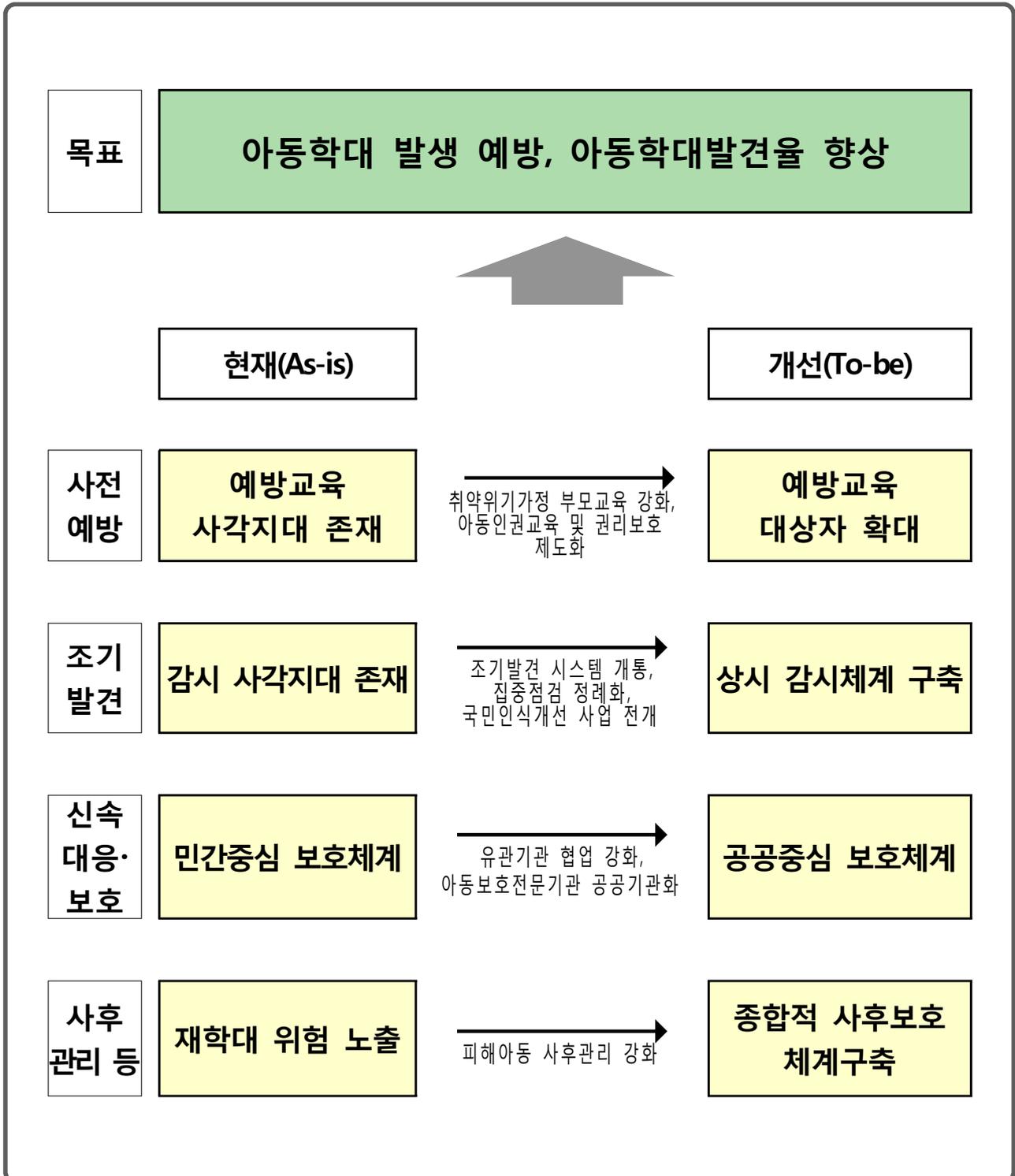
## < 사후관리 >

- 서울 13세·11세 아동 재학대 사건 :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자인 계부가 의붓자식들을 폭행하고 바퀴벌레를 먹이는 등 지속적으로 재학대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 (문제점)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아동학대행위자가 형기 만료 등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체계적인 관리·보호 미흡으로 재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보완방향)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협업 강화 및 보호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지자체 중심의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

◆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최근 학대사건 분석결과에 따라,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 마련

\* 국정과제 48-5: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 1. 사전 예방 : 부모교육 및 아동인권보호 강화

## □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인프라 강화

### ○ 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 (예방·신고 교육)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시 온·오프라인\*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 강화('18.6월~)

\* 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교육자료 게시·배포

### ○ 취약·위기가정 부모 대상 부모교육 강화

- (취약가정) 생계곤란·장애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 1:1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 확대

\* (현행) '16년 86가구, '17년 369가구 제공 → (확대) '18년 400가구 제공

- (이혼위기 가정)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 추진('18.하반기)

### ○ 부모교육 등 인프라 강화

- (부모교육 매뉴얼 보급)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부모교육 매뉴얼\* 온·오프라인 배포('18.3월~)

\* '17.12월, 총 12권(PPT 62편, 동영상 13편 포함)의 종합 매뉴얼 개발 완료

- (전문강사 활용도 제고) 부모교육 전문강사('17년, 216명 양성) 온라인 검색 서비스('18.2월~)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 □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권리보장의 제도화

### ○ 성장기 인권·안전·법교육 강화

-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본권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18.12월)

\* 범교과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인권교육 사례 등 포함

- (아동 안전교육 강화)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18.3월~)

\* 신설된 '안전한 생활', '안전 단원' 교과 담당교원 연수 등을 통해 정기적 추진

- (아동학대 법교육 확대)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의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제도 강연 확대\*

\* (현행) '17년 약 30만명 대상 제공 → (확대) '18년 35만명 대상 제공 목표

### ○ 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

- (진술청취 의무화 등)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재판에서 아동의 진술청취 의무화 및 절차보조인\* 제도 신설 추진('18.하반기)

\* 재판부가 선임하는 변호사 자격자 및 심리학·교육학 등 전문가로서 아동의 의사 및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에 보고·진술

- (가사조사관 업무 보강) 양육적합성 검사를 위해 가사조사관의 업무에 사실조사 외에 '필요한 검사' 추가 추진('18.하반기)

##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 ○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신고 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서 적극 보호\* 추진('18.하반기)

\*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우선고려,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 ○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처벌 내용을 신고의무자 교육('18.4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19.1월~) 내용에 포함해 국민 인식 제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공직유관단체 대상 의무교육 실시

## 2. 조기발견 : 과학적 접근 강화

### □ 위기아동을 조기발견·지원하는 아동행복지원사업 실시

-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보호 필요 아동을 조기발견·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18.3.19.)
  - (방문확인)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복지수요 파악 및 양육상담 실시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필요 시 맞춤형 서비스\* 연계,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동행 현장조사 추진
- \* 시군구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복지, 지역아동센터 등
- 지원이 필요한 아동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분석)모델 고도화 및 신규정보 추가 연계로 사각지대 최소화('18.6월~)
  - (미취학 아동 관련 정보 보강) 미취학 아동학대 사건 집중분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가정 내 학대 관련 정보\* 지속 발굴·연계
- \* 예시 : 치료가 중단된 만성질환 아동 발굴을 위한 진료기록 등

#### < 참고 : 현재 연계된 미취학 아동 관련 주요정보 >

- ①어린이집·유치원 장기결석 ②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③예방접종 미실시
- ④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⑤기존 아동학대 신고·조사 전력 등

### □ 아동학대 점검 및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정례화

-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년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보육시설 집중점검, 재학대 위기아동 모니터링('18.11월)
  - \* 경찰청, 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 예비소집 등 취학 전 단계부터 아동의 소재·안전을 지속 추적·관리,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추진(~'18.12월)

- 생활 속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지역 감시망 구축 및 인식개선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조기발견·신고를 통해 생활 속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망 구축
    -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민간단체(녹색어머니 등)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18.7월~)
  - 다양한 매체(공익광고, 기획방송, 생활접점매체 등)를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로 “체벌=학대”라는 인식 지속 확산('18.3월~)
    -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콘텐츠 개발
    - 아동학대 신고번호(112) 전파를 위한 공모전 실시 및 모바일 신고 앱(아이지킴콜 112) 보급 확산

### 3. 신속대응·보호 : 공공성·전문성 제고

- 아동학대사건 수사 강화
  - 수사정보 공유 및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인센티브 확대
    - (수사정보 공유) 아동학대 사건 개입 단계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수사·지원 정보\* 수시공유('18.5월~)
      - \* 아동학대행위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
    - (시스템 연계) 학대예방경찰관 업무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간편 공유('19.상반기)
    - (인력 확충)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을 제고 추진('19.상반기)
      - \* (인력 증원현황) '16년 138명 → '17년 200명(+62명) → '18년 318명(+118명)
    - (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아동학대 사건 수사 독려를 위해 아동학대 수사 유공자에게 표창·특진 등 확대('18.상반기)

○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통한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

- (전담검사 지속배치)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지속배치\*해 영장청구·형사처분·피해자지원 등 전 과정 책임수사

\* '18.1월 기준 전국 59개 검찰청에 총 103명 배치 운영 중

- (엄정한 법 적용) 아동학대범죄 관련 강화('16.11)된 사건처리기준\* 및 중대학대사건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18.3월~)

\* 피해아동 사망 시 고의·과실 불문 구속,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 등

□ 피해아동 의료·법률서비스 적극 지원

- 피해아동 내원 시 응급의료센터와 정신과 전문의가 공동 대응해 신속하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18.4월~)

\* '18.4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병원(54개)을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19년 상반기까지 226개 지자체별 최소 1개소씩 확대 지정·운영

-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과 권리구제 능력을 고려해 민사·가사소송 관련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변호 등 각종 법률적 조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비용 부담('18.4월~)

\*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추진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수행)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책임성 대폭 강화(~'18.12월)

\* 정부·지자체·민간 협의, 공공기관·민간 역할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18년 말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고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 (조사 등 대응역량 강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권한 강화를 통해 대응역량 강화('19.1월~)

- 아동학대 관련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칭)아동학대점검단’ 설치 검토\*(’18.4월~)
  - \* 아동학대 대책 관련 추진체계의 적정성, 업무량 추이 등을 종합적 분석 후 구체적인 구성안 마련
  - (조기발견) 읍면동 공무원이 관할 내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 적극 발굴 및 안전 확인 실시(’18.3월~)
  - (복지지원) 시군구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및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연계, 읍면동 사례관리 등 지원 역할 강화(’18.3월~)

□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6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개소 확충하고, 지역별 아동분포·접근성 등을 고려해 지속 확대
- \* ’18.3월 현재 아보전 61개소 운영 중 / \*\* ’18.3월 현재 쉼터 59개소 운영 중

## 4. 사후관리 : 재학대 방지

---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보호 강화

-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
  - (사례전문위원회 정기 운영) 경찰·아보전·지자체·법조인·의료인이 포함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건 종료 후 분리 조치 지속 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종합적 사후보호 플랜 마련(’18.4월~)
- 분리조치 후 가정복귀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가정방문)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가정방문해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18.3월~)

## □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강화

-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공유
  - (구속·석방정보) 출소한 아동학대범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 변호사의 신청을 통해 검찰의 구속·석방 관련 정보를 변호사 및 피해아동에게 사전 통지('18.4월~)
    -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과정에서 해당 정보 확인 후 재학대 방지 관리
  - (조사·지원정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 조사내용·결과, 피해아동 지원내용 공유\*('18.4월~)
    - \* 지자체장, 판·검사, 경찰, 학교장, 전담의료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등
-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
  - (퇴소 후 소재 확인)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할 시 보호시설 장이 아동의 퇴소 후 거주지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의무 입력('18.6월~)
  - (주기적 모니터링) 원가정 복귀 후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가정방문 및 유선확인 등을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관리('18.6월~)

## V

## 향후 추진계획

### □ 보완대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 '18.3월까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과제[붙임1]에 대한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과제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
- 추진상황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수시 보고

##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인프라 확장 지속 추진
  - '18년 말까지 아동학대 대책 전달체계 개편 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 '22년까지 매년 지역별 아동분포·접근성에 따른 인프라 확장 시급 지역 분석·선정
  - 국정과제(48-5번)에 따라 학대아동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추진
- '18.3월부터 매년 분기별 1회 아동행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가정 방문·상담 업무 신설에 따른 읍면동 현장인력 보강 추진

##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직군, 지역사회, 비영리법인, 관련 학회 등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대책 추진 및 추가 과제 발굴

분 야	과 제 명	소 관	추진 일정
사 전 예 방 (8)	▣ 부모교육 강화		
	① 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	복지부	'18.6월 ~
	② 취약가정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	여가부	'18.3월 ~
	③ 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	법무부	'18.하반기
	④ 부모교육 인프라 강화	여가부	'18.3월 ~
	▣ 아동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		
	⑤ 성장기 인권·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18.3월 ~
	⑥ 학생 대상 아동학대 법·제도교육 강화	법무부	'18.3월 ~
	⑦ 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	법무부	'18.하반기
	▣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⑧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 적극적 보호	권익위	'18.하반기	
조 기 발 견 (6)	▣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시행		
	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안전 확인	복지부	'18.3월 ~
	⑩ 위험변수 지속 발굴	복지부	'18.6월 ~
	▣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		
	⑪ 지역사회자원, 민간단체 통한 감시망 구축	복지부·행안부	'18.7월 ~
	⑫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	복지부	'18.3월 ~
신 속 대 응· 보 호 (9)	▣ 학령기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제도화		
	⑬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 운영	경찰청·복지부	'18.11월
	⑭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	교육부·경찰청	'18.3월 ~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⑮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	기재부	'19.상반기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⑯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강화	기재부	'18.3월 ~
	⑰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점검단 설치 검토	복지부·행안부	'18.4월 ~
▣ 아동학대사건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⑱ 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	법무부	'18.3월 ~	
⑲ 아동학대사건 업무협조 강화	경찰청	'18.5월 ~	
⑳ 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	경찰청	'18.상반기	
㉑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및 운영내실화	경찰청	'19.상반기	
▣ 피해아동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㉒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복지부	'18.4월 ~	
㉓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국가비용부담	복지부	'18.4월 ~	
사 후 관 리 (4)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㉔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플랜 마련	복지부	'18.4월 ~
	㉕ 학대피해아동 주기적 관리	복지부	'18.3월 ~
	▣ 재학대 방지 사후 관리		
	㉖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	복지부	'18.4월 ~
㉗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	복지부	'18.6월 ~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신고건수	10,943	13,076	17,791	19,214	29,674	34,221
최종 학대 판단건수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1,524
아동학대 증가율(%)	-	6.14	47.54	16.83	59.62	15.10

□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b>계</b>	<b>6,796(100)</b>	<b>10,027(100)</b>	<b>11,715(100)</b>	<b>18,700(100)</b>	<b>21,524 (100)</b>
<b>부모</b>	5,454(80.3)	8,207(81.8)	9,348(79.8)	15,048(80.5)	16,611 (77.2)
<b>친인척</b>	351(5.2)	559(5.6)	562(4.8)	795(4.3)	1,033 (4.8)
<b>대 리 양 육 자</b>	786(11.6)	990(9.9)	1431(12.2)	2,173(11.6)	3,054 (14.2)
(어린이집 교직원)	202(3.0)	295(2.9)	427(3.6)	587(3.1)	776 (3.6)
(유치원 교직원)	53(0.8)	99(1.0)	204(1.7)	240(1.3)	275 (1.3)
(초중고교 교직원)	28(0.4)	145(1.4)	234(2.0)	576(3.1)	1,290 (6)
(학원·교습소 종사자)	11(0.2)	80(0.8)	64(0.5)	167(0.9)	197 (0.9)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389(5.7)	206(2.1)	324(2.8)	283(1.5)	246 (1.1)
(부모의 동거인)	86(1.3)	146(1.5)	158(1.3)	311(1.7)	235 (1.1)
(위탁부모)	13(0.2)	12(0.1)	13(0.1)	5(0.0)	20 (0.1)
(베이비시터)	4(0.1)	7(0.1)	7(0.1)	4(0.0)	15 (0.1)
<b>타인</b>	85(1.3)	124(1.2))	187(1.6)	201(1.1)	352 (1.6)
<b>기타</b>	85(1.3)	129(1.3)	166(1.4)	454(2.4)	429 (2)
<b>파악안됨</b>	35(0.5)	18(0.2)	21(0.2)	29(0.2)	45 (0.2)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6,796	10,027	11,715	18,700	21,524
중복	2,922	4,814	5,347	8,980	10,947
신체	753	1,453	1,884	2,715	3,012
정서	1,101	1,582	2,046	3,588	4,360
성	242	308	428	493	626
방임	1,778	1,870	2,010	2,924	2,579

□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2012~2017, 연도별)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망자 수	8	17	14	16	36	31

□ 재학대 발생 비율(2012~2017, 연도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학대 판단 건수	6,403	6,796	10,027	11,715	18,700	21,524
재학대 건수(%)	914 (14.3%)	980 (14.4%)	1,027 (10.2%)	1,240 (10.6%)	1,591 (8.5%)	1,759 (8.17%)

□ 아동학대 발견율(2014~2017,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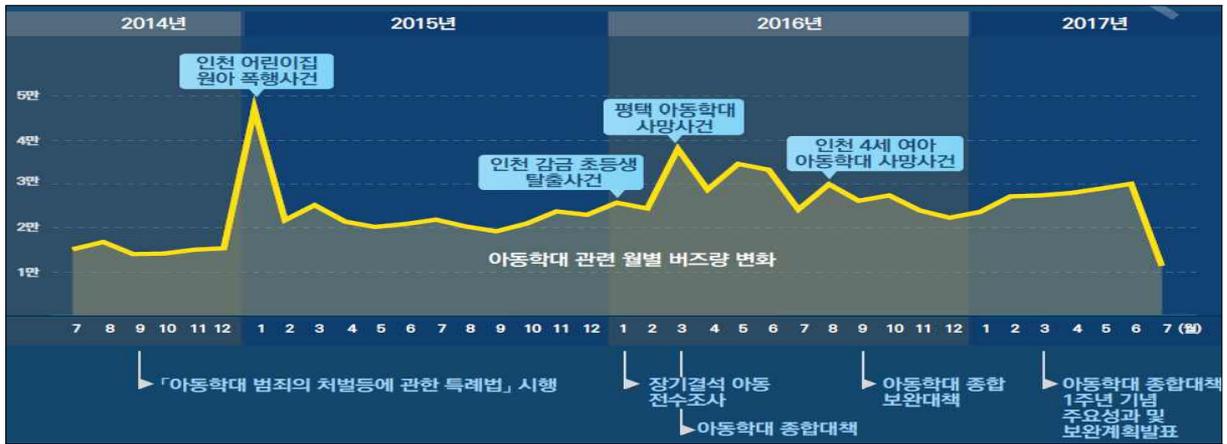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아동학대 발견율(‰)	1.10	1.32	2.15	2.51

□ 최근 3년간('14.7~'17.6) 소셜미디어 상 아동학대 언급빈도 분석

-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빈도는 아동학대 신고추이 및 관련 사건 발생과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

< 참고 : 소셜미디어 상 아동학대 언급빈도 >



- “범죄”에 대한 언급빈도가 '15년 이후 급상승 → 아동학대가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범죄)”로 인식되는 경향 반영

□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 개요 및 결과

- (조사대상) 전국 20세 이상 국민 1천명(지역·성·연령 비례할당)
- (조사기간) '17.6.28 ~ '17.6.30

< 참고 : 조사내용 및 결과 >

조사내용	조사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 인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줄만한 기관 인지율 33.6%</li> <li>- 여성(41.9%)이 남성(35.7%)보다 높은 인지율</li> </ul>
아동학대 신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번호(112등) 인지율은 17.7%에 불과</li> </ul>
신고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li> </ul>
신고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보장 미흡(58.3%), 신고 후 조사과정 부담(41.7%), 업무량 증가(33.3%) 등 순</li> </ul>
체벌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 중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li> <li>- 적당한 체벌은 필요(14.6%), 교육차원(10.4%), 설명에 한계 존재(9.3%), 훈육에 효과(9.2%) 등 순</li> </ul>